

## 서울행정법원 2026. 3. 11 선고 2024구합78061 판결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

#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

담당변호사 정민영, 이형준

피 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지

담당변호사 최영재, 김나래

변론종결 2026. 1. 21.

판결선고 2026. 3. 11.

### 주 문

- 피고가 2024. 6. 11. 원고에게 한 과징금 30,000,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{원고는 당초 '방송통신위원회'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. 6. 11. 자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. 10. 1. 법률 제21066호로 제정·시행되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었고,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

의 소관사무 중 제11조 제1항의 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하고, 종전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(부칙 제3조 제1, 2항 참조).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25. 11. 4.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,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를 '방송통신위원회'에서 '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'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(이하 경정 전 ·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'피고'라 한다)}.

## 이 유

### 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,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, 2022. 9. 22. 및 2022. 9. 23. 위 각 방송프로그램에서 D 전 대통령(이하 '전 대통령'이라 한다)이 미국 뉴욕 현지 시각 2022. 9. 21. 16:20경 E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동행했던 F 등에게 “(미국) 국회에서 이 × ×들이 승인 안 해주면 G은 쪽팔려서 어떡하나?”라는 발언(이하 '이 사건 발언'이라 한다)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방송'이라 한다).

나.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이 '(우리나라) 국회에서 이 × ×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?'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아래, 이 사건 방송이 「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」(이하 '이 사건 심의규정'이라 한다) 제14조(객관성)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, 2024. 6. 11. 구 방송법(2025. 10. 1. 법률 제2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 30,000,000원을 부과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### 3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
가.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'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.'고 규정하고 있다. 구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·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, 이 사건 심의규정 제14조는 '객관성'이라는 표제 아래 '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,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.'고 규정하고 있다.

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,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, '객관성'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(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

나.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이 이 사건 심의규정 제14조가 정한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① 원고가 이 사건 방송 당시 '(미국)', 'G은'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막을 송출하기는 하였으나, 전 대통령의 이 사건 발언이 녹화된 영상도 함께 송출하였으므로, 통상의 방법으로 자막과 함께 영상을 본 평균적인 시청자의 입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면서 불명확하게 들리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설명 또는 해석을 덧붙인 것이라고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.

즉, 이 사건 방송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이 아니라, 불명확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방송하면서 원고의 의견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.

② 먼저 '(미국)'의 경우 전 대통령이 '미국'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언급한 사실이 없기는 하나, 자막의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의 이 사건 발언이 녹화된 영상과 함께 송출되었고, 위 영상에는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발언을 하기 전 말없이 걸어가는 장면과 이 사건 발언을 시작하는 장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.

다음으로 'G은'의 경우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사건의 제1심(서울서지방법원 2022가합37946호)에서 감정 결과 '판독불가'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.

전 대통령이 E에서 대한민국이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기는 하였으나, G 대통령 역시 의회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이 60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, G의 위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이 녹화된 영상을 송출하면서 전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승인 거절을 염두에 두고 'G은'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이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.

위 정정보도 청구 사건의 항소심(서울고등법원 2024나2005491호)에서도 이 사건 방송이 진실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,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25. 9. 4. 위 결정이 확정된 바 있다.

③ 원고는 이 사건 방송 당시 “이 사건 발언의 맥락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”(2022. 9. 22. 12:00 ~ 12:20에 방송된), “대통령실은 '진위 여부를 판명해 봐야 한다.'면서 '주변 참모들에게 사적으로 한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.'고 진화에 나섰습니다.”(2022. 9. 22. 19:40 ~ 21:00에 방송된), “이 사건 발언 16시간 만에 H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긴 시간 충분히 검토해 보았는데, 이 사건 발언에 등장한 '국회'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, 특히

야당 의원들을 지칭한 것이고,'G'으로 보도되었던 단어는 '날리면'이었다는 것입니다.”(2022. 9. 23. 19:40 ~ 21:00에 방송된) 등 이 사건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였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의 의미와 관련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.

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,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#### 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 사 양순주 판사 김영완

---

 별지